

#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실 백종훈 차장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 사업장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지점사업장 등이 폐쇄되기도 하면서 사업장간 재고재화의 이동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동일 법인의 사업장간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의 중여와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사용 및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은 사업자의 잔존재화에 대해 재화의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켜 과세형평을 확보하는 것이다.

## 사업장폐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의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사업을 폐지하는 때란 폐업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라도 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는 경

우, ② 동일 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던 자가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는 경우, ④ 미착재화, ⑤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장 통폐합 및 지점폐업을 하는 경우 지점 등에 보관하고 있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지점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지점의 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본점으로 이동된 뒤 판매·출고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고정자산의 경우 지점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종전 지점의 고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본점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 ♣ 부가 46015-407, 2001. 2. 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